

10.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8일
- 발 의 자 : 박우근 의원, 박소영 의원, 박종필 의원, 이동욱 의원,
이만규 의원, 이성오 의원, 이영애 의원, 이재숙 의원,
허시영 의원, 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2일
- 상정일자 :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6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2월 16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우근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감뿐만 아니라 경찰청과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,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,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,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(안 제3조 및 제6조)
-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자료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관련기관,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3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경찰청장과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6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교육감과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3조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관련기관,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각종 대책에 대한 협조 대상을 경찰청장까지 확대 하고,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202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,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 대비 올해 학교폭력 피해응답인원이 2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, 학교폭력 피해유형도 언어폭력, 집단따돌림, 사이버폭력, 신체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, 학교폭력예방 정책추진을 위해 경찰청장까지 협조기관을 확대 하고,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음.

【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】



【 학교급별 피해응답률(%) 】



- 대구시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,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
-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 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교육청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구시에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하겠음.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책 추진을 위한 협조대상을 교육감에서 경찰청장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,
- 학교폭력 대책 등에 대한 심의·의결을 위해 설치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관련기관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만큼, 필요한 예산 지원과 함께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궁금함.		기존에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많은 상황이나, 해당 조례에는 경찰의 역할이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	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